

제2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【이규선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4. 11. 1.

행 정 위 원 회
전 문 위 원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경 과

의안 제414호로 2024년 10월 14일 이규선 의원 외 4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24년 10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시설관리공단의 위·수탁 업무에 대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지정하는 사업 및 시설의 효율적 관리·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(안 제25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공기업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(2024. 10. 17.~10. 22./5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의 제3자 위탁과 관련한 단서를 삭제함으로써 구민 생활 서비스를 제고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

○ 주요 내용으로

- 안 제25조(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등)는 같은 조례 제24조 제1항제1호(공영주차장 관리·운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사업) 및 제2호(불법 주·정차 차량의 견인 및 보관소 운영사업)의 사업에 대해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는 단서를 삭제함.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「지방공기업법」 시행령 제63조 제5항에 따르면 “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다”고 규정하고 있으나, 우리 구(區)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는 ▲공영주차장 관리·운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▲불법 주·정차 차량의 견인 및 보관소 운영사업에 관해서

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.

- 이러한 단서는 「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전문개정조례(안)」가 영등포구의회 제101회 제2차 정례회(상임위원회 보류) 제102회 임시회(상임위원회 수정안발의)에 상정¹⁾되고, 수정안 가결된 부분으로 당시 회의록을 참고하면 공영주차장과 관련된 부분의 재위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[7쪽 참고자료 3(회의록 발췌 부분) 참조] 를 막고자 한 것으로 보여짐.

※ 제102회 임시회 「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전문개정조례(안)」

원안	수정안
<p>제25조(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등)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.</p>	<p>제25조(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등)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. <u>단, 제2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은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.</u></p>

1) 「지방공기업」이 2002년 3월 25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충되는 조문을 신설 또는 개정하고자 「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전문개정조례(안)」이 제101회 제2차 정례회(2003.12.6.)에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.

- 그러나, 현재 서울시 타 자치구 중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 관련 사항을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는 곳은 우리 구(區)가 유일함. 아울러 기술의 발달로 인력으로 운영되던 단순 업무가 무인시스템으로 바뀌고 있고,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고, 고려하고자 한다면 현행 조례에 따라 [영등포구 → 시설관리공단] 에 위탁한 사항을 [영등포구 → 시설관리공단 → 재위탁업체] 의 제3자 재위탁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기에 조례 개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됨.

참 고 자 료

1 지방공기업법

제71조(대행사업의 비용 부담)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한다.

2 지방공기업법

제71조(대행사업의 비용 부담) ⑤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.

○배기한 위원 기획예산과장! 지금 우리 공단을 설립하는 게 주차장 운영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? 모든 시설을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에서 직접 운영하려면 골치가 아프니까 재위탁을 한다 이 말이에요.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 있느냐고?

○배기한 위원 서울시도 그래요, 서울시 도시관리공단도 보면 복지시설 이런 것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게 전부 다 똑같은 방법을 써요.

우리 구청에서 어느 믿을 만한 단체에 운영권을 넘겨준다 이 말입니다.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, 차라리 구청에서 쥐 버리면 되지. 이게 책임회피하려고 떠넘기는 거예요.

현재 운영상으로 보자고. 서울시에서 청소년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것 전부 다 그런 단체에 주고 있지 않아요? 거기에서 운영하잖아.

그러면 그 도시관리공단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, 구청에서 막 바로 주고 서울시에서 막 바로 주면 되지.

전에 보면 도시관리공단 같은 이런 게 서울시 공무원들, 고위직 공무원들이 퇴직하면 자리 맞춰줄려고 했다고. 그렇게 밖에 안 받아들여져.

구체적으로 무슨 장단점을 한 번 얘기해 봐요.

○행정국장 정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

지금 공단이 10개가 있다고 하면 재위탁 주는 경우는 한 두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그래서 조례에 재위탁 규정을 넣자고 했습니다.

인근에 있으면 한 사람이 돌면서 하면 되는데 인건비가 안 나오는 주차장이 있습니다. 한 사람은 거기에 꼭 세워야 되는데 인건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가피하게 직영하는 것보다는 위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전체가 아니라 10개면 한 두

개가 들어가 있고요.

또 복지센터를 운영한다고 할 때 다 재위탁 줄 거 아니냐, 재위탁 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재위탁을 주려고 해도 공단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.

이것은 예산에서 반영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승인을 할 때 거기에서 얼마든지 재위탁을 줘서는 안 된다, 또는 그쪽에서는 안 주려고 해도 이것은 재위탁을 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...

여기에서 재위탁 부분을 빼 버리면 나중에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지를 못하고 어렵습니다.

○배기한 위원 공단을 설치하는 것은 이익이라든가 모든 것을 더 배하기 위해서 합니다.

지금 구청에서 얘기하는 걸로 하면 이게 책임회피밖에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. 각 부서에서 머리 아프고 그러니까 공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운영하게 하자, 모든 것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.

왜,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. 이걸 개인이 운영할 때 하고 공단에서 운영할 때하고 이익이 우선 노력 여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개인이 하는 것보다 공단을 설치해서 하면 수입측면으로 봐도 한 1/3은 감소가 될 겁니다.

왜, 개인은 적극적으로 자기 이익창출을 위해서 그만큼 노력하지만 공단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는 거기에 직원을 배치해 봐도 압박이 커서 못 봤습니다 등등하고 타당하지를 았다고 생각하고,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차라리 솔직하게 의회에 와서 인력창출 측면에서 접근을 합시다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겠어요. 그런데 사업성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.

이상입니다.